

▶HL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님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장례 무기한 연기하고 만도에 책임을 묻겠다"

노동조합 7/27 사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예정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노동자 빈소 안내>

안중장례문화센터 2층 무궁화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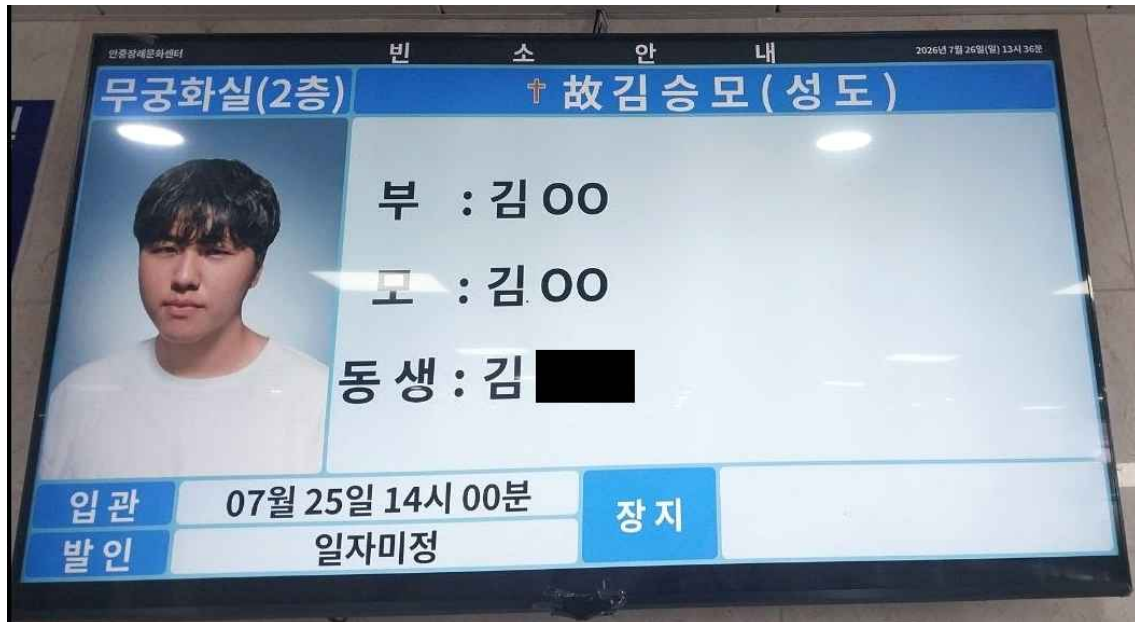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931-11)

1. 2026년 7월 22일(수) 12시 48분경,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머시닝센터(MCT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MCT 기계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14시 경 평택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으나 14시 40분경 사망했습니다.
2. 고인은 1998년 7월 출생으로 이제 막 28세 생일을 맞은 참이었습니다. HL만도 평택공장에

는 2025년 10월 입사해서 9개월 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피아로딕스의 대표는 만도의 정규직 출신으로 주변에 따르면 소속 노동자가 서너명 정도가 다 라고 합니다.

3.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확인 결과 해당 작업은 원래 2인1조로 진행되었으나 고인은 11호기 작업이 끝나갈 때 12호기를 미리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12호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12호기는 원래 다음 주에 작업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아침 원청 ‘매니저’로부터 이번 주 안에 끝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12호기는 당일 오전 다른 하청업체에서 다른 작업을 마치고, 사고 당시 시험 가동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4. MCT설비에는 원래 인터록 장치가 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있으면 가동이 되지 않아야 하지만 12호기는 구형으로 인터록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에도 알려야 하지만 사측은 119 구급차를 불러 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에는 소통하지 않았고, 우연히 한 조합 간부가 구급차를 목격하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고 발생 후 30여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6. 노동조합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24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평택지청장 항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오후 2시 유가족과 함께 지청장, 노동조합이 함께 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7. 유가족인 고인의 아버지는 “아들이 만도에서 일하게 됐다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만도가 마찌꼬바 보다는 못한 작업환경 일수 있느냐”며 꼭 참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안전하다고 했잖아, 2인1조라서 안전하다며, 만도라서 안전하다며” 라며 아버지를 붙잡고 통곡하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 사고를 조용히 덮으려고 했다. 내 가슴속에 평생 묻어 두려고 했는데, 사고 현장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을 방치할 수 있느냐, 만도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라고 하시며 이후 노동조합에 위임장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8. 사고 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MCT 설비 내부에서의 유지 보수 수리 등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그림1). 그러나 만도 사측은 11호기와 12호기만 작업을 중지하여 노동조합에서 항의했고, 고용노동부 항의방문을 하여 이후 사고가 발생한 4라인의 MCT설비 전체(1~15기 15대)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9. 사측은 사고 후 현장에 ‘사과문’을 부착했지만 내용을 보면 “현장 안전 수칙과 작업 절차 준수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라는, 사고의 원인을 은연중에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림2).
10. 노동조합(만도지부 평택지회)은 27일 월요일 오후 사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를 전달할 것입니다.
11. 현재 유가족과 노동조합(만도지부)은 25일 오후부터 평택의 안중장례문화센터(서동대로 1

931-11)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만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유족의 뜻에 따라 고인의 이름과 사진은 공개합니다. 다만 비통한 마음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의 모습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취재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제 2026-8 호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에이치엘만도(주)

소재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1 ((주)만도)

전화번호: 02-6244-2243

아래 작업은 산업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업중지 범위	MCT 설비 내부에서의 유지 보수, 수리 등 작업 일체
작업중지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기타 ()

※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림1 7월 22일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작업중지 명령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 같은 협력업체 직원분께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운명하셨습니다.

사고는 7월 22일(수) HL만도 평택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비통한 심정에 빠져 계실 유가족과 동료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고통과 충격을 겪고 계실 협력업체 관계자분들과 현장 직원분들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안전 수칙과 작업 절차 준수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 7. 23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

CSO & CLO 총괄대표 김현욱

▲그림2 사고 다음날 7월 23일 HL만도 사측이 만도 평택공장 현장에 부착한 '사과문'



▲7월 24일 사고현장 방문 당시. 가운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 사고가 발생한 MCT설비 12호기